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9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차지호 · 김주영
이수진 · 박균택 · 한민수
김 현 · 송옥주 · 임미애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·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·배전 거리, 전력 자급률,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43조 및 제4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91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후단 중 “요금과”를 “송전·배전 비용 및 거리,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요금과”로 한다.

제45조 중 “국가균형발전 등을”을 “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·소비 촉진 등을”로, “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”로, “비용 등을”을 “비용 및 거리,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리 정할 수 있다.

-----비용 및 거리, 전력
자금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
등을-----
-----.